

[별표 1] <개정 2015.12.22.>

소음 · 진동배출시설(제2조의2 관련)

1. 소음배출시설

가.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 · 기구

- 1) 7.5kW 이상의 압축기(나사식 압축기는 37.5kW 이상으로 한다)
- 2) 7.5kW 이상의 송풍기
- 3) 7.5kW 이상의 단조기(기압식은 제외한다)
- 4) 7.5kW 이상의 금속절단기
- 5) 7.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.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(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)
- 6) 7.5kW 이상의 탈사기
- 7) 7.5kW 이상의 분쇄기(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)
- 8) 22.5kW 이상의 면속기
- 9) 7.5kW 이상의 기계체
- 10)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
- 11) 37.5kW 이상의 혼합기(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)
- 12) 37.5kW 이상의 공작기계
- 13) 22.5kW 이상의 제분기
- 14) 15kW 이상의 제재기
- 15)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
- 16) 37.5kW 이상의 인쇄기계(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,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)
- 17) 37.5kW 이상의 압연기
- 18) 22.5kW 이상의 도정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 지역 ·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)
- 19) 37.5kW 이상의 성형기(압출 · 사출을 포함한다)
- 20) 22.5kW 이상의 주조기계(다이캐스팅기를 포함한다)
- 21)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
- 22) 15kW 이상의 펌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, 「소방법」 제42조에 따른 소화 전은 제외한다)
- 23) 22.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(습식신선기 및 합사 · 연사기를 포함한다)
- 24) 22.5kW 이상의 초지기
- 25) 7.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
- 26) 위의 1)부터 25)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.5kW 이상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)인 경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
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)

참고: 위 26)에서 동력합계 37.5kW 이상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)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.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1, 1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9, 22.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8, 37.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.5kW 이상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)인 경우를 말한다.

나.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·기구

- 1)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
- 2)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
- 3) 자동제병기
- 4) 제관기계
- 5)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
- 6) 40대 이상의 직기(편기는 제외한다)
- 7) 방적기계(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)

다. 그 밖의 시설 및 기계·기구

- 1) 낙하해머의 무게가 0.5톤 이상의 단조기
- 2) 120kW 이상의 발전기(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)
- 3) 3.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
- 4) 석재 절단기(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.5kW 이상으로 한정한다)

비고

1.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·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.
 - 가.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(A) 이하인 경우
 - 나.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(A) 이하인 경우
2.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·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·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·검사기관(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.
2. 진동배출시설(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·기구로 한정한다)
 - 가. 15kW 이상의 프레스(유압식은 제외한다)
 - 나. 22.5kW 이상의 분쇄기(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)
 - 다. 22.5kW 이상의 단조기
 - 라. 22.5kW 이상의 도정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)
 - 마. 22.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

바. 37.5kW 이상의 성형기(압출·사출을 포함한다)

사. 37.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

아.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

참고: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·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